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4-2-1호	지정연월일	2024년 1월 23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미스터먼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59-88-0017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727호		
	대표자 정성준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주요내용)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2024.10.14. ~ 2026.10.13.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례내용) 미스터먼션이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령에 대하여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li><li>○ (실증범위) 공유숙박 서비스 지역은 서울·부산 지역으로 한정하며, 호스트는 4,000명 이내로 모집,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li><li>○ (조건) 불임의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li></ul>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부가 조건 >

-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기업은 플랫폼 등록 전에 a. 또는 b.의 사실을 확인
  - \* 아래 "a." 유형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 "a." 유형에 따른 신규 등록은 불가함. 또한, 2026년 7월 31일까지 실증특례 등록을 마친 호스트에 한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록을 유효하게 인정함.
- a. 다음의 모두
  -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
  - △호스트가 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
  -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 미만이라는 사실
  -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하나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
  -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 예시 )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중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 직상하층 포함 )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 △호스트의 영업시설이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개별난방에 한함 ),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
- b. 호스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사실
  - ▶ 지정기업은 호스트의 플랫폼 등록 전에 호스트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
  - ▶ 호스트는 숙박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 ▶ 지정기업은 다음 모두를 위한 체계를 구축·이행
    - △이용자 후기 및 호스트 평점 공개
    -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민원 발생시 신속 처리
    - △이용자 앱 실명가입 및 숙박인수 입력
    -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실시
  - ▶ 지정기업은 호스트로부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수령
  - ▶ 지정기업은 다음의 자료를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제출
    -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개시 직전 ) 플랫폼 등록 호스트 자료
    -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개시 후 분기별 ) 신규 플랫폼 등록 호스트 자료, 불만접수 처리 내역
    -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개시 후 반기별 ) 호스트별 영업일
  - \* 총매출액, 숙박인원 등 제출자료의 세부내역은 추후 협의를 거쳐 제출
  - ▶ 지정기업은 호스트의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또는 심각·반복적인 주민간 민원 발생 시 호스트 제외 조치
  - ▶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전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
  - ▶ 지정기업 및 호스트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시 발효와 동시에 개정법의 규율에 따를 것